

학부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

1. 요지

대학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

2. 학부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

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

- 1)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(학칙 제28조 제1호)
- 2)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(학칙 제28조 제3호)
- 3) 성적이 불량한 자(학칙 제28조 제4호)
- 4)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(학칙 제30조)

3)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.(학칙 제31조 제2호)
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.(학칙 제41조 제4호)

3. 학부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

가.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

- 1)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(학칙 제28조 제5호)
- 2)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(학칙 제28조 제8호)

나.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: 재입학은 1회에 한함(학칙 제31조)

학부 재입학 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

항 목	처 리 내 용																
심사절차	1. 재입학 지원자 재입학원서(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)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과 면담한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 ※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부터 법과대학 제적생의 재입학 지원이 허용되며 대상자는 아래 학과 중 택1하여 지원 가능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대학</th> <th colspan="3">학부/학과</th> </tr> <tr> <td>사회과학대학</td> <td>정치외교학과</td> <td>행정학과</td> <td>경제학과</td> </tr> <tr> <td>경영대학</td> <td colspan="3">경영학부</td> </tr> <tr> <td>신산업융합대학</td> <td colspan="3">국제사무학과</td> </tr> </table>	대학	학부/학과			사회과학대학	정치외교학과	행정학과	경제학과	경영대학	경영학부			신산업융합대학	국제사무학과		
	대학	학부/학과															
	사회과학대학	정치외교학과	행정학과	경제학과													
	경영대학	경영학부															
신산업융합대학	국제사무학과																
2. 학과 및 전공 학과(전공)교수회의에서 개인별 심사를 거쳐 재입학 타당 여부를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소속 행정실에 제출 ※ 제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원자의 경우 재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 및 소속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 ※ 교과과정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'교과과정 기준표'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(붙임 4. 학사현황 및 재입학 후 교과과정기준표 서식) ※ 재입학생이 재입학 후 소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입학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																	
3. 대학 행정실 재입학 지원자의 관계서류 검토 후 대학의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회의를 거쳐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대학장 명의 공문으로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																	
4. 교무처 학적팀 관계서류 및 여석을 검토하여 재입학 최종 심사 후 재입학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소정의 절차가 끝난 후 해당자에게 재입학 허가 사실을 통지																	
심사기준	■ 재입학 지원자에 대한 재입학 허가 심사는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의견서, 기타 관계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재입학 지원자의 제적 당시 소속학과/전공이 현재 변경이나 분리된 경우 또는 교과과정이 변경되어 재입학 후 본인의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등 재입학 후 소속하게 될 학과/전공 및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. ■ 재입학은 학생정원 범위에서 당해 학기 여석을 사용하며, 재입학에 따른 입학사정 및 학적 재생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재입학 승인 시 신청자의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

2027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일정

일 정	내 용	관련부서
2026년 10월 1일(목)	학부 재입학 공고 (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)	교무처 학적팀
10월 1일(목)	학부 재입학 공문발송 (각 대학)	교무처 학적팀
10월 12일(월) - 10월 23일(금)	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	각 대학 행정실
10월 26일(월) - 11월 4일(수)	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	각 학과 및 대학
11월 5일(목)	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교무처 제출	각 대학 행정실
11월 9일(월) - 11월 23일(월)	학적사항 검토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판단	교무처 학적팀
11월 27일(금)	학부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	교무처 학적팀
12월 2일(수) 예정	학부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(유레카)	교무처 학적팀
2027년 2월 1일(월) ~ 2월 4일(목)	학부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	지도교수
2월 중 -2월 중 2027-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	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	총무처 회계팀
3월 2일(화)	2027학년도 제1학기 개강	

학부 재입학 원서

대 학		학과/학부		전 공	
학 번			이 름		
생년월일			E-mail		
현 주 소	(우편번호:) *우편물 수령 가능한 정확한 주소 기재				
전화번호			이동전화		
			긴급연락처		
입학일자	년	월	일 입학		
제적일자	년	월	일 제적		
제적사유	1.자 퇴() 2.미 등 록() 3.미 복 학() 4.성적불량() 5.학생활동() 6.기 타()				
성적 및 등록사항	누계평점 : 총 재학학기 : 총 학기 재학 학사경고횟수 : 총 회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					
항 목			수집목적	보유기간	
성명, 신입학 학번, 신입학 소속, 생년월일, 이메일주소, 주소, 전화번호, 입학일자, 제적일자, 제적사유, 성적 및 등록사항			재입학 업무 처리	10년	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입학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			☐ 예 ☐ 아니요		

* 첨부서류 (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행분)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성적증명서 | 1부 |
| 2.재입학요청서 | 1부(특례 재입학만 해당) |
| 3.전공주임교수 추천서 | 1부(특례 재입학만 해당) |
| 4.학생활동 증빙서류 | 1부(특례 재입학만 해당) |

본인은 _____학년도 제____학기에 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 : (인)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귀하

학부 재입학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의견서

■ 소속(제적 당시): 대학 학부.학과 전공 학년

■ 소속(재입학 후): 대학 학부.학과 전공 학년

(※ 재입학 지원자의 제적 당시 소속학과/전공)이 현재 변경 또는 분리된 경우 재입학 후 소속을 기재하여 주세요)

■ 교과과정적용 기준 변경 : 유 · 무

(※교과과정적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**교과과정 기준표**를 작성하여야 함)

■ 학 번 :

■ 성 명 :

■ 의 견 :

년 월 일

학과장(전공주임교수)_____ (인)

* 참조: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(미등록, 미복학 등)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